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4호(號) 1927(昭和 2)년 8월 20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63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104호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[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]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20일 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본칙(本則)제2조(條) (1), (2) 및 (4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(1) 여객(旅客) 및 수·소하물(手小荷物)

(가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각(各) 역소(驛所: 단동[安東]을 포함한 간이역[簡易驛] 및 함경중부선[咸鏡中部線], 동[同] 북부선[北部線], 청진선[淸津線] 각[各] 역[驛]을 제[除]하고, 이하 동일함)와 조철선(朝鐵線) 충북선(忠北線), 전남선(全南線), 경남선(慶南線), 경북선(慶北線), 황해선(黃海線), 함남선(咸南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하고, 이하 동일함) 상호간(相互間)

(나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함경북부선(咸鏡北部線) 및 청진선(淸津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조철선(朝鐵線) 함북선(咸北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상호간(相互間)

(2) 소하물급(小荷物扱) 폐낭우편물(閉囊郵便物)

(가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부산(釜山), 목포(木浦)와 조철선(朝鐵線) 전남선(全南線) 광주역(光州驛) 간(間)

(나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진해(鎭海), 경화(慶和,) 창원(昌原) 역(驛)과 조철선(朝鐵線) 경남선(慶南線) 군북(郡北), 진주(晋州) 역(驛) 간(間)

(다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청진(淸津), 나남(羅南), 부령(富寧), 회령(會寧) 역(驛)과 조철선(朝鐵線) 함북선(咸北線) 신참역(新站驛) 간(間)

(4) 화 물(貨物)

(가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각(各) 역소(驛所) 및 만철선(滿鐵線) 해성(海城), 요양(遼陽), 펑톈(奉天), 철령(鐵嶺), 개원(開原), 창도(昌圖), 쌍묘자(雙廟子), 사평가(四平街), 공주령(公主嶺), 범가둔(范家屯), 창춘(長春), 무순(撫順), 본계호(本溪湖)와 조철선(朝鐵線) 충북선(忠北線), 전남선(全南線), 경남선(慶南線), 경동선(慶東線), 경북선(慶北線), (黃海線), 함남선(咸南線) 각(各) 역(驛) 상호간(相互間)

(나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함경북부선(咸鏡北部線) 및 청진선(淸津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조철선(朝鐵線) 함북선(咸北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세칙(細則) 및 설명(說明)1 함남선(咸南線)의 다음에 「함북선(咸北線)═동고무산역(同古茂山驛)」을, 동(同)8 「내지(乃至) 30톤(噸·ton)」의 아래[下]에 「함북선(咸北線) 내(內)를 차급(車扱)으로 연락(聯絡)하는 화물(貨物)은 1구(口) 8톤(噸·ton), 9톤(噸·ton), 10톤(噸·ton), 16톤(噸·ton)부터 30톤(噸·ton)까지」를 추가(追加)함.